

#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3034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년월일 : 2025년 8월 11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생계곤란 등 경제적인 사유로 질병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 
보건의료 취약계층에게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의료비  
부담 경감 및 적기 치료로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의료비 및 의료비 융자 이자 정의를 규정함  
(안 제2조제4호 ~ 제5호)

나.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대상 및 환수 조건에 관한 사항을  
규정함 (안 제8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보건의료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
#### 다. 협의사항

- (1) 창의규제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- 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제출
- 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원안동의
- 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개선사항 없음
- (5) 규제개선담당관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- 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- 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 
검토의견: 해당없음

#### 라. 기타

- (1) 입법예고(2025. 7. 17. ~ 7. 25.) 결과: 의견없음
- 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※ 작성자: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한삼희 (02-2133-7509)

##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의는”을 “뜻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“공공보건의료”라 함은”을 ““공공보건의료”란”으로, ““시””를 ““시”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“공공보건의료사업”이라 함은”을 ““공공보건의료사업”이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“안전망병원”이라 함은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라 시장이”를 ““안전망병원”이란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”로 하며, 같은 호 나목 중 “공공의료기관”을 “공공의료기관(민간의료기관(무료)과 연계되어 공공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시립병원)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시립병원

4. “의료비”란 질병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이 시행하는 수술 및 시술과 직접 관련된 비용(비급여 비용을 포함한 본인부담금)을 말한다.

5. “의료비 용자 이자”란 질병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말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시장”으로 한다.

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,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(의료비 용자 이자 지원대상) 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또는 「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용자 이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2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
3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
4.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의료비 용자 이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,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 사업을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. 다만, 차액에

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.

④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의 한도, 기간, 지원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2조(종전의 제11조) 중 “관하여 필요한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          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       정       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2조(정의) -----<br>----- 뜻은 -----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. “공공보건의료”라 함은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(이하 ‘시’라 한다)가 지역·계층·분야에 관계없이 시민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·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| 1. “공공보건의료”란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 “시”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. “공공보건의료사업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.<br>가. ~ 다.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. “공공보건의료사업”이란 ---<br>-----<br>--.<br>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. “안전망병원”이라 함은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라 시장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으로 다음의 각 목과 같다.<br>가. (생략)<br>나.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의료영역을 수행하는 민간의료기관으로서 공공의료기 | 3. “안전망병원”이란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-----<br>-----<br>-----.<br>가. (현행과 같음)<br>나. -----<br>-----<br>----- 공공의료기 |

관과 서비스 역할을 분담  
하는 의료기관

다. 공공의료기관이란 민간의  
료기관(무료)과 연계되어  
공공의료서비스를 지원하  
는 시립병원

<신 설>

<신 설>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  
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 
취약계층의 보편적 의료이용을  
보장하고 공공보건의료로 강화  
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  
을 추진하여야 한다.

②·③ (생략)

<신 설>

관(민간의료기관(무료)과  
연계되어 공공의료서비스  
를 지원하는 시립병원)---

-

다.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 사  
업에 참여하는 시립병원

4. “의료비”란 질병 치료를 위해  
의료기관이 시행하는 수술 및  
시술과 직접 관련된 비용(비  
급여 비용을 포함한 본인부담  
금)을 말한다.

5. “의료비 융자 이자”란 질병  
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금융  
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 
대한 이자를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시장----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대  
상) 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

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또는 「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용자 이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
2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

3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

4.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의료비 용자 이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,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 사업을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. 다만, 차액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에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>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.</u><br><u>④ 의료비 용자 이자 지원의 한도, 기간, 지원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u> |
| <u>제8조 ~ 제10조</u>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>제9조 ~ 제11조</u> (현행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u>제11조</u> 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<u>관하여 필요한</u>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| <u>제12조</u> (시행규칙) -----<br>-- <u>필요한</u> -----<br>----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### I. 비용추계 요약

- 비용발생 요인 : 의료비 용자이자 지원 사업 비용 발생
- 비용추계의 전제 : 향후 5년 소요비용 추계
-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| 연도        |             | 1차년도    | 2차년도    | 3차년도    | 4차년도    | 5차년도    | 합 계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구분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
| 지출        | 이차보전금, 배상금등 | 120,000 | 170,000 | 170,000 | 170,000 | 170,000 | 800,000 |
|           |             | -       | -       | -       | -       | -       | -       |
|           |             | -       | -       | -       | -       | -       | -       |
|           | 소 계(a)      | 120,000 | 170,000 | 170,000 | 170,000 | 170,000 | 800,000 |
| 수입        |             | -       | -       | -       | -       | -       | -       |
|           | 소 계(b)      | -       | -       | -       | -       | -       | -       |
| 총 비용(a-b) |             | 120,000 | 170,000 | 170,000 | 170,000 | 170,000 | 800,000 |

### 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 : 천원)

| 연도  |       | 1차년도    | 2차년도    | 3차년도    | 4차년도    | 5차년도    | 합 계     |
|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구분  |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
| 국 비 |       | -       | -       | -       | -       | -       | -       |
| 시비  | 지방세수입 | 120,000 | 170,000 | 170,000 | 170,000 | 170,000 | 800,000 |
|     | 세외수입  | -       | -       | -       | -       | -       | -       |
|     | 지방채 등 | -       | -       | -       | -       | -       | -       |
| 민 간 |       | -       | -       | -       | -       | -       | -       |
| 기 타 |       | -       | -       | -       | -       | -       | -       |
| 합 계 |       | 120,000 | 170,000 | 170,000 | 170,000 | 170,000 | 800,000 |

5. 덧붙이는 의견 : 1차년도 시범사업 기준 작성, 본사업 추진 시 비용추계 재산정

6. 작성자 :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한삼희(2133-7509)

### 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(단위 : 천원)

| 연도 |             | 1차년도<br>(2026) | 2차년도<br>(2027) | 3차년도<br>(2028) | 4차년도<br>(2029) | 5차년도<br>(2030) | 합 계     |
|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구분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지출 | 이차보전금, 배상금등 | 120,000        | 170,000        | 170,000        | 170,000        | 170,000        | 800,000 |
|    | 합 계         | 120,000        | 170,000        | 170,000        | 170,000        | 170,000        | 800,000 |